

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맹진영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한 열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에 동참해 주신
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
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□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개정으로 기금의 민간
위탁 관리를 금지함에 따라 투·융자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행기관
의 도입,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강화 등 필요한 사항을
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.

□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
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